

1. 개정이유

위생안전기준 항목중 ‘아민류’에 대한 공정시험방법이 '22.12월 개정됨에 따라 ‘아민류’ 시험분석 수수료를 새로 마련하고, 공장심사 수수료중 심사수당에 적용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공표가 중단됨에 따라 유사 부문으로 변경하는 등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인증업무 수행 및 업체의 부담 경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또한, 인증서 재발급 요청시 현행 인증서 및 사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나 정확한 행정처리를 위해 변경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하고 아울러, 업체가 동일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통합하거나 업체 사정으로 자진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를 허용하여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증정보망을 통해 인증서를 관리하므로 인증서 반납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인증 반납 신설(제10조)

- 1) 폐업한 경우, 제품생산 종료 등 업체 사정으로 자진해서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추가

나. 인증서 재발급 사유 및 첨부 서류 변경(제12조)

- 1) 인증서 재발급시 현행 인증서 및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
- 2) 동일 제품에 대한 2개 이상의 인증서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서 재

발급을 허용하고 아울러, 인증정보망에서 상시 발급이 가능하므로 인증서
분실 및 훼손시 재발급 관련 규정은 삭제

다. 공장심사전 인증심사 중단시 공장심사 수수료 모두 반환 (제15조)

라. 수수료 관련 규정 정비(별표4)

1) 공장심사 수수료(심사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환경부문의 고급기술자 임금단가
적용

2) ‘아민류’ 시험분석 수수료 145,000원 신설

3)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건당 2만원) 삭제

마. 이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문구 정비

1) 인용조문 수정 (제4조제2호, 제7조제2항, 제16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
의3, 제16조의4, 제16조의5, 별지 제7~10호)

2) 인증제품의 냉·온수 사용 구분 표시 등 일부 서식 정비(별지 제1호~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예정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6조”를 “법 제14조의3”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인증서의 반납)”을 “(인증의 반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서를 인증원에 반납해야 한다”를 “인증을 인증원에 반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품생산 종료 등의 사유로 자진해서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유서를”을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동일 제품에 대한 2개 이상의 인증서를 통합하는 경우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증원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정보망을 이용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인증서 재발급”을 “영문인증서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을”을 “1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전액을”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법 제14조의3제1항”을 “법 제14조의5제1항”으로, “영 제24조의3제1항제4호”를 “영 제24조의4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4조의3제2항 또는 법 제14조의4제2항”을 “법 제14조의5제2항 또는 법 제14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의3 중 “영 제24조의5”를 “영 제24조의6”으로 한다.

제16조의4 중 “법 제14조의5제2항”을 “법 제14조의7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의5 중 “영 제24조의10제1항”을 “영 제24조의11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 중 “산업공장부분”을 “환경부문”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1,1,1-트리클로로에탄란 다음에 아민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민류	145,000
-----	---------

별표 4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문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2만원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별표 4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제14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제2항”을 “제

14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제14조의3제2항 또는 제14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제2항 또는 제24조의7제2항”을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5제2항 또는 제24조의8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중 “「수도법」 제14조의5”를 “「수도법」 제14조의7”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제14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10제1항”을 “제14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11제1항”으로 하고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정기검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법인 대표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ISO 인증일										
회사현황	자본금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매출액(A)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원				
	영업이익(B)		백만원		1인당 교육·훈련투자비 (교육·훈련비/C)		백만원				
	종업원수 (C)	경영간부		명		연구·개발투자율 (연구·개발비/A)		%			
		기술직		명		공정자동화율 (자동화공정/전체공정)		%			
		사무직		명		설비자동화율 (자동화설비/전체설비)		%			
		기타		명							
	계		명								
신청 제품	제품명										
	인증번호		(정기검사인 경우 작성합니다)								
	직전 인증일		(정기검사인 경우 작성합니다)								
	종류		등급		호칭		재질				
	모델명		* 인증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모델명은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용도		[] 일반수도용 자재 [] 급수설비 [] 말단 급수설비 [] 표층용 재료								
	냉/온수		[] 냉수 [] 온수 [] 냉·온수 혼용								
	HS 코드	□□류, □□□□.□□-□□□□			G2B 코드	□□-□□-□□-□□-□□□□□□□□					
	신청 제품의 다른 기관 인증 현황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일 (유효기간)		표준명		표준번호

「수도법」 제14조제1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생 안전기준 인증 또는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이
제
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수수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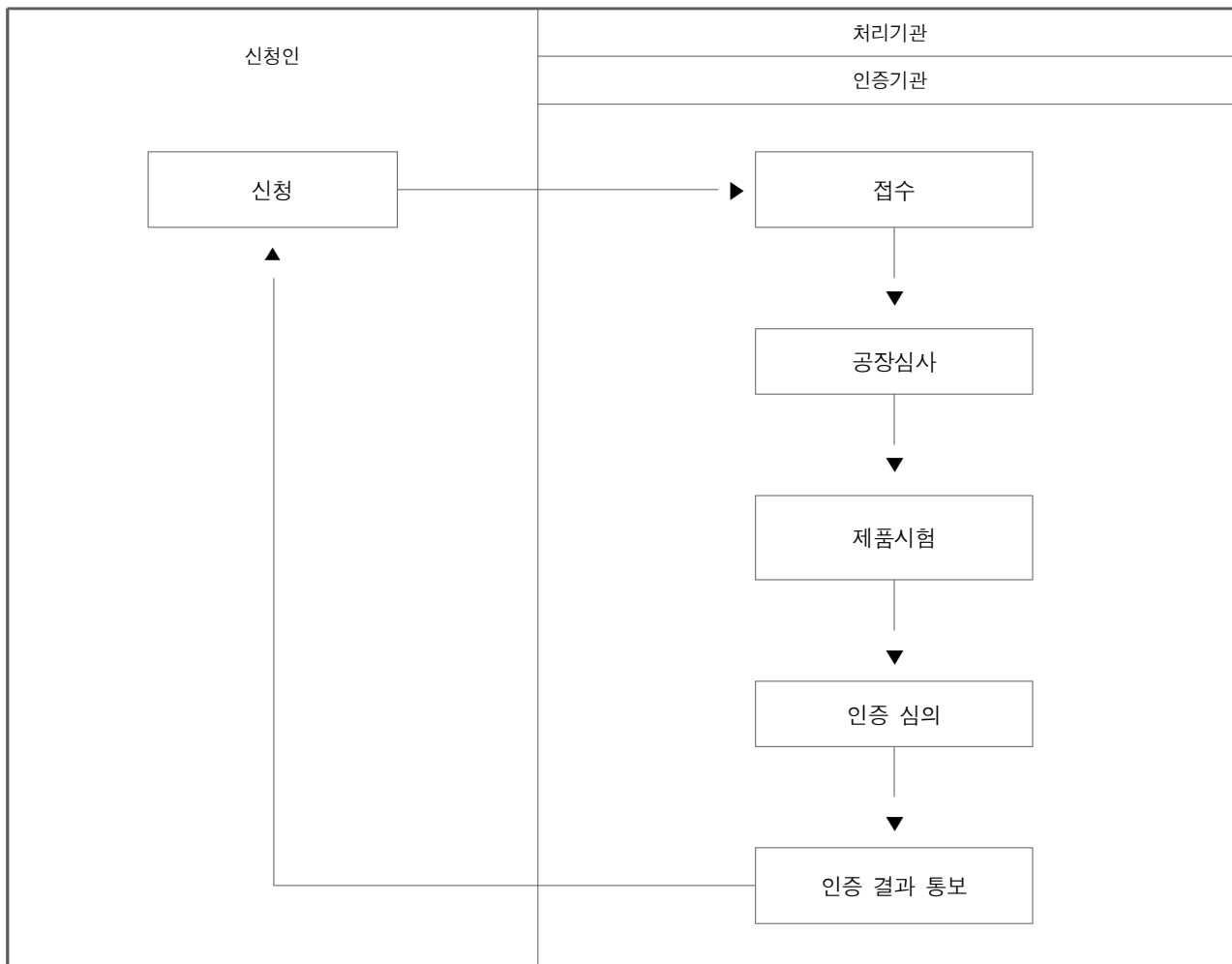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서류

- 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 등의 서류 1부
 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질(부품도 포함합니다) 정보 명세서 1부
 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부피의 값(산출을 위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치수를 포함합니다)과 제원(諸元)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설계도면 1부
 마. 제조·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각 1부
 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각 호의 관리규정 목록 각 1부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 인증 신청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별 사진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1. 인증번호: 제 호

2. 제조업체명:

3. 대표자:

4. 본사 주소:

5. 공장 소재지:

6. 제품명:

※ 인증상세사항은 뒤쪽 참조

7. 용도: [] 일반수도용 자재 [] 급수설비
 [] 말단 급수설비 [] 표층용 재료

「수도법」 제14조제1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물기술인증원장

직인

(뒤쪽)

<인증상세사항>

종류 및 등급	호칭	재질	모델명	냉·온수 구분

* 인증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모델명은 같이 기재할 수 있음.

<변경사항>

변경일	내용	확인

<행정처분사항>

행정처분일	내용	확인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0일
------	-----	------	-----

신청인	제조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본사 주소	
	공장 주소	

인증제품	인증번호 및 인증일	
	인증제품명	
	인증제품의 종류 및 등급	구분 [] 냉수 [] 온수 [] 냉·온수 혼용
	인증제품의 호칭	
	인증제품의 재질	
	인증제품의 모델명	
	인증제품의 용도 [] 일반수도용 자재 [] 급수설비 [] 말단 급수설비 [] 표충용 재료	

변경사유	[] 생산공장 이전	[] 생산시설 및 공정 변경	[] 인증제품의 재질 변경
------	-------------	------------------	-----------------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가. 인증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제조·검사 설비에 관한 명세서 각 1부 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각 호의 관리규정 목록 각 1부 마. 인증제품의 물질정보 명세서 1부. 바.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인증기관	→	공장심사 인증기관	→	제품시험 검사기관	→	인증 심의 인증기관	→	인증 결과 통보 인증기관
---------------	---	------------	---	--------------	---	--------------	---	---------------	---	------------------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본사 주소		
	공장 주소		
인증제품	인증번호 및 인증일		
	인증제품명		
	인증제품의 종류 및 등급	구분 [] 냉수 [] 온수 [] 냉·온수 혼용	
	인증제품의 용도 [] 일반수도용 자재 [] 급수설비 [] 말단 급수설비 [] 표층용 재료		
	인증제품의 호칭		
재발급사유	[] 대표자 변경 [] 상호변경 [] 인증서 통합 [] 그 밖의 사항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분실한 경우 해당 없음) 1부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인 증 서 발 급

신청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

사업자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자	(직급)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전자메일	

제품명		상표·모델명	
제조기간 (수입기간)		제조수량 (수입수량)	
공급기간 (판매기간)		공급수량 (판매수량)	

권고의 수락 여부

수거등의 시기 · 방법 등 조치계획(별도 자료 첨부 가능)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별도 자료 첨부 가능)

「수도법」 제14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제2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 권고, [] 명령)

사업자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	(직급)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제품명			상표·모델명	
제조기간 (수입기간)			제조수량 (수입수량)	
공급기간 (판매기간)			공급수량 (판매수량)	
권고/명령 날짜				
권고/명령 사항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별도 자료 첨부 가능)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별도 자료 첨부 가능)

「수도법」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5제2항 또는 제24조의8제2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조사원증

(앞쪽)

제 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 조사원증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시·도지사

55mm×85mm[백상지(15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수도용 자재와 제품 조사원증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수도법」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수거등의 권고·명령 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30일
사업자	법인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전자메일	
제품명			
권고·명령 접수날짜			
권고·명령 내용			
해제 신청 사유			

「수도법」 제14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11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명령에 대한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인증 신청) 1. (생 략) 2.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 는 서류 3. ~ 8. (생 략)	제4조(인증 신청)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2항에----- ----- ----- 3. ~ 8. (현행과 같음)
제7조(제품시험) ① (생 략) ② 인증원은 제품시험을 실시하 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지정 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제7조(제품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14조의3에----- -----.
제10조(인증서의 반납)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인증서를 인증원에 반납해야 한다.	제10조(인증의 반납) ----- ----- ----- ----- 인증을 인증원에 반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2. (생 략) < 신 설 >	1. (삭제) 2. (현행과 같음) 3. 제품생산 종료 등의 사유로 자 진해서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제12조(인증서 재발급) 인증을 받은	제12조(인증서 재발급) -----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인증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인증서를 훼손, 분실한 경우
4. (생략)

제13조(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①·② (생략)

<신설>

제15조(수수료) ① 인증, 인증의 변경, 인증서 재발급 또는 정기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4에 따른 수수료를 인증원에 납부해야 한다.

② 인증원은 인증, 인증의 변경 및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가 공장 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중 3분의 1을 반환해야 한다.

----- 변경내용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
-----.

1. ~ 2. (현행과 같음)
3. 동일 제품에 대한 2개 이상의 인증서를 통합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제13조(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인증원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정보망을 이용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① -----

-- 영문인증서 발급 -----

② -----

----- 1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전

제16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 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영 제2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통지기한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2항 또는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려는 사업자는 수거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에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액을 -----.

제16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 ① 법 제14조의5제1항-----

-- 영 제24조의4제1항제4호----

-----.

② 법 제14조의5제2항 또는 법 제14조의6제2항-----

-----.

제16조의3(공표의 방법) <u>영 제24조의5</u>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이란 인증정보망을 말한다.	제16조의3(공표의 방법) <u>영 제24조의6</u> ----- ----- -----.
제16조의4(현장조사의 조사원증) <u>법 제14조의5제2항</u> 에 따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4(현장조사의 조사원증) <u>법 제14조의7제2항</u> ----- ----- -----.
제16조의5(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 <u>영 제24조의10제1항</u> 에 따른 수거 등의 권고·명령의 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5(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 <u>영 제24조의11제1항</u> ----- ----- -----.

<별표4 수수료(제15조관련)>

현행	개정안				
2. 공장심사 수수료 가. (생략) 나. 심사수당 1) 금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u>산업공장부분의</u> 고급기술자 임금단가 2)·3) (생략) 다. (생략)	2. 공장심사 수수료 가. (현행유지) 나. 심사수당 1) ----- ----- ----- <u>환경</u> <u>부분의</u> ----- ----- 2)·3) (현행유지) 다. (생략)				
3. 제품시험 수수료 가. (생략) 나. 시험분석 비용 (아민류 신설)	3. 제품시험 수수료 가. (생략) 나. 시험분석 비용 <table border="1"> <tr> <td>분석 항목</td><td>수수료(원)</td></tr> <tr> <td>아민류</td><td>145,000</td></tr> </table>	분석 항목	수수료(원)	아민류	145,000
분석 항목	수수료(원)				
아민류	145,000				
4. <u>인증서의 재발급 및 영문인증서 발급 수수료</u> 가. <u>인증서 재발급 수수료는 건당 2만원으로 한다.</u> 나. <u>영문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건당 2만원으로 한다.</u> 다. <u>가목 및 나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u>	4. <u>영문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건당 2만원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u>				